

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안 번호	3-10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4. 12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담당자들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함

☐ 주요골자

가. 보험가입대상 공무원을 인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직자로 정함(안 제2조)

나.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

다.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,000만원이상으로 정함(안 제3조제2항)

라.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함(안 제4조)

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정신고 포함)업무·인감증명발급업무·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,000만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を負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·보험금액·보험료·보험기간·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시민과 ☎ 940-4201
입 안 자	시 민 과 장	김 규 범
	호 직 담 당	이 미 경
	담 당 자	전 현 경

【별지서식】

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관리대장

(단위:원)

구 분 (기관명)	보험가입자 현황				보험가입금액	보험료	보험기간	비고
	개	담당	담당자	대직자				
개								

○○시(군·구)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시장(군수·구청장)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○○○○만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(군수·구청장)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(군수·구청장)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시장(군수·구청장)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시장(군수·구청장)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